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70

제출년월일 : 1994. 6.
제 출 자 : 안 산 시 장

1. 개정이유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재외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등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년간 7일이상의 년가는 2회이상 분할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1회에도 전년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자치단체장에의 여행신고 제도를 폐지함. (안 제19조 제2항 및 제26조의 2)

나. 지방공무원이 국외파견근무를 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재외공무원 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재외공관장에게 파견공무원의 복무 감독권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0조 제3항)

다. 승진.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도록 함 (안 제22조 제4호)

라. 형제자매 결혼시, 형제자매 또는 백숙부모사망시 및 형제자매 탈상시 부여되는 특별휴가를 배우자측의 형제자매 및 백숙부모의 경조사시에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안 별표 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 구조문 대비표 별첨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안산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 집행기관장 명칭사용)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8조 제1항 본문중 "공무원의 근속기간"을 "공무원의 근속기간 (사실상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한다)" 으로 한다.

제19조 제2항 단서중 "특별한 사유가 있는"을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으로 한다.

제21조 제1항중 "2월"을 "60일"로, 동조 제2항중 "6월"을 "180"일로 한다.

제22조 본문중 "필요한 기간"을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으로 하고, 동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승진.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제26조의 2중 "시장에게 신고하고"를 삭제한다.

[별표3]의 결혼. 사망 및 탈상의 대상란중 "형제자매"를 각각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하며, 사망의 대상란중 "백숙부모"를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부모"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조문 대비표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제10조(파견근무) ①~②(생략)
〈신설〉</td><td>제10조(파견근무) ①~②(현행과 같음)
③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집행기관장 명칭사용)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td></tr>
<tr><td>제18조(연가일수) ①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table><tr><th>근 속 기 간</th><th>연가일수</th></tr><tr><td>3월이상 6월미만</td><td>3일</td></tr><tr><td>6월이상 1년미만</td><td>7일</td></tr><tr><td>1년이상 2년미만</td><td>8일</td></tr><tr><td>2년이상 3년미만</td><td>11일</td></tr><tr><td>3년이상 4년미만</td><td>14일</td></tr><tr><td>4년이상 5년미만</td><td>17일</td></tr><tr><td>5년이상</td><td>20일</td></tr></table>②(생략)</td><td>제18조 (연가일수) ①공무원의 근속기간(사실상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한다) ----------
<table><tr><th>근 속 기 간</th><th>연가일수</th></tr><tr><td>3월이상 6월미만</td><td>3일</td></tr><tr><td>6월이상 1년미만</td><td>7일</td></tr><tr><td>1년이상 2년미만</td><td>8일</td></tr><tr><td>2년이상 3년미만</td><td>11일</td></tr><tr><td>3년이상 4년미만</td><td>14일</td></tr><tr><td>4년이상 5년미만</td><td>17일</td></tr><tr><td>5년이상</td><td>20일</td></tr></table>② (현행과 같음)</td></tr>
</table>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생략) ②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연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④(생략)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현행과 같음) ②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 ③~④(현행과 같음)
제21조(병가) ①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2월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1.~2. (생략) ②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6월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제21조(병가) ① ----------60일---------- 1.~2. (현행과 같음) ② ---------- 180일----------
제22조(공가)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22조(공가)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

현 행	개 정 안
1.~3. (생략) 〈신설〉 4. 생략	1.~3. (현행과 같음) 4.승진.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26조의2(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시장에게 신고하고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6조의 2(국외여행)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

(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본 인	7
	자 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회 갑	본인 및 배우자	5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
출 산	배우자 (처)	1
사 망	배우자	7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5
	자 녀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부모	3
탈 상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 비 고 :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문서 량 50% 줄이기 적극 실천합시다"

경 기 도

우 : 441-701 / 주 : 경기 수원 원천 매산로3가 1번지 / 전화 (0331) 42-4781 / 전송 5812

문서번호 총무 12100 - 1310

시행일자 1994. 5. 17. (영구)

선결	시장		지사	5.22
접	일자 시간	5. 19	결재	부시장
수	번호	1177		총무국장
처리과		총무과		총무과장
담당자		7급을		총무계장

수신 수신처참조

참조

보사전송
송신자 나110-
전문번호 6736

제목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표준화 시달

1. 내무부 지공 12100-149 ('94. 5. 10) 호의 이첩임.

2. 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조례 표준안을 붙임과 같이 시달하니 개정 · 시행하고, 공포시에는 공포예정 보고를 생략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 1부. 끝.

경 기 도 지

수신처 : 리

5-1

地方公務員服務條例中改正條例 (標準案)

1. 改正理由

公務員의 私的 國外旅行을 自律化하고, 在外公務員의 服務에 관한 規定을 新設하는 등 地方公務員의 服務에 관하여 現實과 맞지 아니하거나 不合理한 사항을 개선·補完하려는 것임.

도지사

2. 主要骨子

가. 年間 7日이상의 年休는 2回이상 分割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私的으로 國外旅行을 한 경우에는 1回에도 全年暇日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所屬自治團體長에의 旅行申告制度를 廢止함(案 第9條第3項 및 第26條의2).

나. 地方公務員이 國外派遣勤務를 한 경우에는 國家公務員에게 적용되는 在外公務員服務規程을 준용하도록 하고, 在外公館長에게 派遣公務員의 服務監督權을 委託할 수 있도록 함(案 第10條第3項).

다. 昇進·轉職試驗에 應試할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公暇을 허가하도록 함(案 第22條第4號).

라. 兄弟姉妹 結婚시, 兄弟姉妹 또는 伯叔父母死亡시 및 兄弟姉妹 脫喪시 부여되는 特別休暇를 配偶者側의 兄弟姉妹 및 伯叔父母의 喪中事시에도 부여할 수 있도록 함(案 別表3).

3. 參考事項

가. 關係法令 : 생 략

나. 豫算措置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合 議 : 해당기관 협의

라. 기 타 : 新·舊條文對比表, 별첨

조례 제 호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표준안)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국외의 정부기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집행기관장 명칭사용)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본문중 "공무원의 근속기간"을 "공무원의 근속기간(사실상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한다)"으로 한다.

제19조제2항단서중 "특별한 사유가 있는"을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의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으로 한다.

제22조본문중 "필요한 기간"을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으로 하고, 동조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동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승진 ·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제26조의2중 "직접시장(도지사)에게 신고하고"를 삭제한다.

[별표3]의 결혼 · 사망 및 퇴임의 대상란중 "형제자매"를 각각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하며, 사망의 대상란중 "백숙부모"를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부모"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3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파견근무) ①-② (생 략) <신 설>	제10조(파견근무) ①-②(현행과 같음) ③국외의 정부기관 ·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집행기관장 명칭 사용)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8조(연가일수) ①공무원의 근속기간 및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제18조(연가일수) ①공무원의 근속기간(사실상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한다)

근 속 기 간	연가일수
3월이상 6월미만	3일
6월이상 1년미만	7일
1년이상 2년미만	8일
2년이상 3년미만	11일
3년이상 4년미만	14일
4년이상 5년미만	17일
5년이상	20일

②(생 략)

근 속 기 간	연가일수
3월이상 6월미만	3일
6월이상 1년미만	7일
1년이상 2년미만	8일
2년이상 3년미만	11일
3년이상 4년미만	14일
4년이상 5년미만	17일
5년이상	20일

②(현행과 같음)